

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

(제23조제3항 관련)

임용예정 직무분야	응시교육과정
소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○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· 소방안전공학과 · 소방방재학과 · 소방행정학과 ·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○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· 소방안전공학과 · 소방방재학과 · 소방행정학과 ·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구급 분야	응급구조학과 · 간호학과 ·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화학 분야	화학과 · 응용화학과 · 화학공학과 ·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기계 분야	기계과 · 기계공학과 ·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전기 분야	전기와 ·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건축 분야	건축과 · 건축학과 ·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비고	
<p>1.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,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,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,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.</p> <p>2.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3.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